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1 선고 2021가단3029 판결 [공사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5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2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3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아산시 C 신축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9. 2. 22.자 도급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 류희현

별지